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융합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3차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202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057호]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관리지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

I.

사업 개요 및 사업내용

1. 사업목적

-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 등 지역 신기술을 융합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디지털 新산업 발전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역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및 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서비스 발굴, 시민대상 서비스 실증, 기술 고도화 비용 지원
- 지역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서비스 맞춤형 사업화 지원(창업 5년 이상 기업 1개사)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금	민간부담금	비고
블록체인 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5년이상, 기술.서비스간 블록체인 융합, 매시업을 통한 신제품.서비스 개발 	1개社	최대 103백만원	총사업비의 25% 자체 부담 (민간부담금 중 10% 이상 현금부담 필수)	부가세 미지원 * 투자컨설팅 * 용역비 23백만원 포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 (사업예산) 총 103백만원

※ 융합서비스 103백만원×1건

<사업화 지원>	<투자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지원(10개社 8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모집을 통해 융합서비스 1개社 지원 - 서비스 실증, 기술고도화 비용 등 ※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관련 비용등 지원 : 신규채용인건비, 전문가활용비, 마케팅홍보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컨설팅(10개社 2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지원을 받은 10개社 대상(1개社 당 23백만원) - 전담기관이 선정한 민간 투자사(AC, VC)가 컨설팅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IR활동, 투자유치, 사업화컨설팅 활동 등에 필요한 내용 지원) ※ 기업별로 투자컨설팅 용역비 23백만원 책정

※ 예산 지급방법 : 사업 착수시 50%를 지급하고, '25년 11월 내 50% 지급 예정(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교부·집행일정에 따라 지급 방법/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1. 30.

Ⅱ.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 (신청대상)대구광역시 소재 IT/SW분야 법인사업자中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 주관은 대구지역 기업으로 한정(접수일까지 본사, 지사, 연구소 이전 또는 설립必)
 - ※ 사업 선정 기업은 협약전까지 민간부담금 납입 계약서 및 보증보험(지원금) 제출 必
 - ※ 대구체인, 다대구 연동 권장

2. 신청 방법 및 기간

- (공고기간) 2025. 7. 1(화) ~ 2025. 7. 10(목)
- (접수기간) 2025. 7. 8(화) ~ 2025. 7. 10(목) 14:00 까지(제출완료시점 기준)
- (접수방법) ① e-mail 접수 후 ② 기한내 원본 우편/방문 신청·접수
 - ※ 제출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

3. 신청 유의사항

- 전담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 수행계획서의 불입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조건 미달될 경우, 최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신청, 평가, 추진절차등 세부 내용은 공모안내서를 참조

Ⅲ.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1. 선정

- (선정방식)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

업 평가기준에 따름

- 세부내용은 공모안내서 및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 기준” 참조
- (선정제외) 각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2. 선정 제외대상

- 접수마감 당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총괄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 당일까지,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사업 신청완료 및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아래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완료대상 및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기업이전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완료대상 및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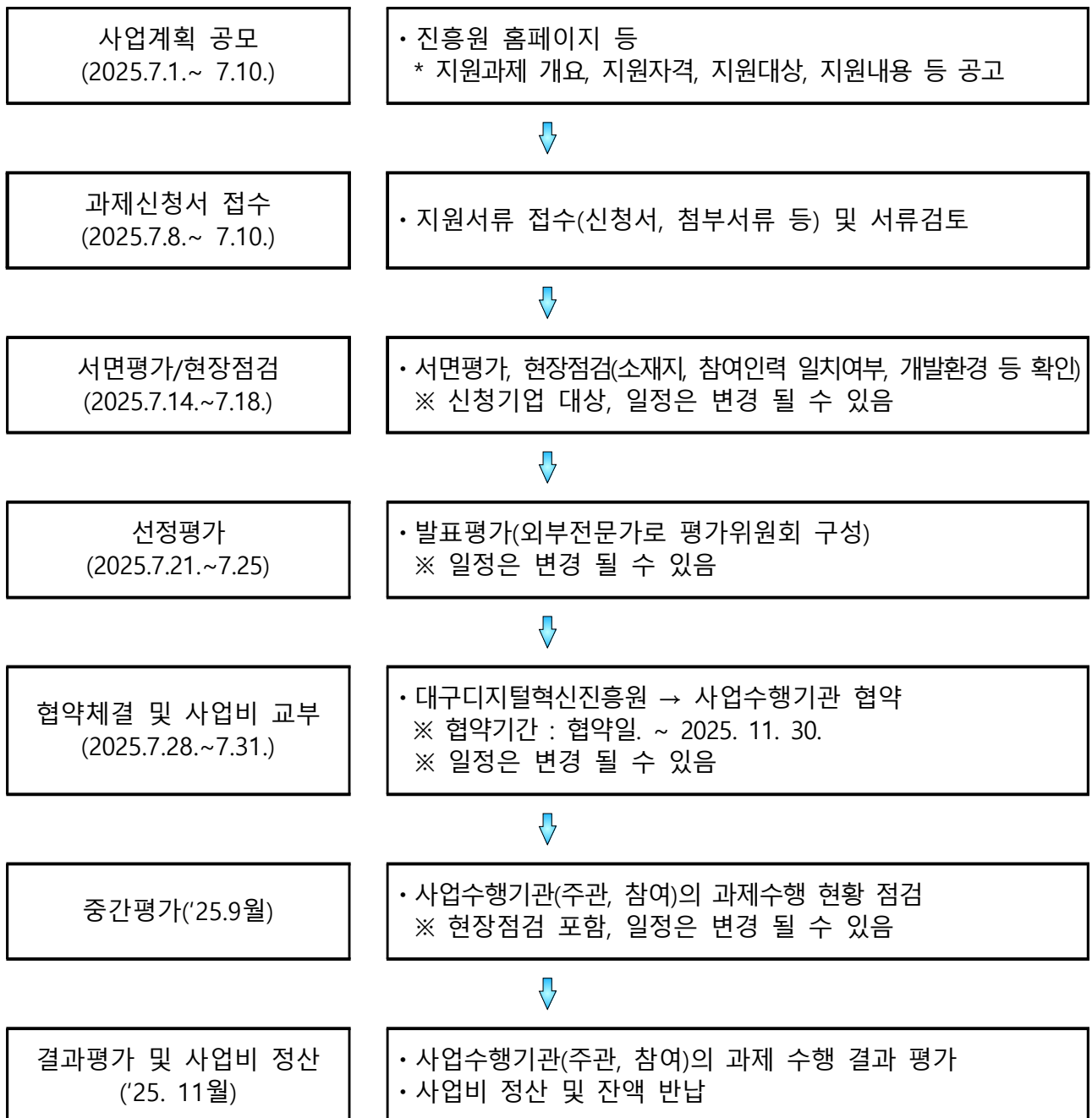
IV. 공모 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

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V. 사업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VI.**문의처**

구분	이메일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BB기반팀	fullitem@dip.or.kr	김남국 수석	053-655-5624

※ 세부 공모 내용은 www.dip.or.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 참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Daegu Digital Innovation Promotion Agency

○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개인: 24년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인 경우): 24년 12월말 재무제표, 법인(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년도 재무제표(ex: 25년 3월말 재무제표 등)
----------------	---

-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